國家와 警察을 사랑하는
大韓民國在鄕警友會

警友新聞

발행처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우 : 100-82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 2234-1881 FAX : 2231-7557
발 행 인 : 具 弘 壹 편 집 인 : 李 庸 祥
등록번호 : 문화다05675
창 간 일 : 1970년 12월 13일

☎ 구독안내 : 02-2234-1881 www.ex-police.or.kr 2006년 8월 7일 (월) 제1342호

不法 暴力示威 언제까지 ?

- 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때 正當性 인정 받아 -

지난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사 노조원 2,400여명이 포스코 本社 점거농성을 하면서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LP가스통을 개조한 私製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붓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격폭력행동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70여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7월 12일에는 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가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2만 6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다 경찰로 부터 저지를 당하자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보도블럭을 부숴 던져 전경의 귀가 찢어지는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혼잡과 무질서로 통행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것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시위문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지난해 연말 WTO 협상중 농민시위자 사망과 관련, 치안의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이 물러난 이후 잠시 주춤했던 폭력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

특히, 이번 포항지역 전문건설사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인 포스코 본사건물 현장에서 2천여개의 쇠파이프, 私製 화염방사기로 사용된 LP가스통 6개 등이 나와 큰 충격을 주었고, 지난 12일 서울시청앞 「FTA협상 반대 집회」 역시 미국원정 시위때 허가된 구역과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준법시위를 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시위대가 「국내법은 무시해도 좋다」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작년 연말 시위도중 발생한 농민사망 사건과 WTO 반대 집회를 계기로 2006년 1월 19일 발족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民·官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평화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의 숙제를 풀기 위해 그 해법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경찰청도 최근 계속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이택순 청장이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한 포럼에 참석해 『치안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를 관리하되 遵法集會는 최대한 보호하고, 불법폭력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금년을 평화집회시위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아울러 모든 집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경찰력과 집회 참가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질서유지와 시위대 안전보호 위주로 대처하고 집회 신고시 집회주최 측과 경찰 상호간에 준법집회 협정을 맺도록 권고하는 등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는 여전히 폭력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시위 관련 부상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이나 단체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사회적 지지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문턱에 둔 시점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구태의연한 후진국 수준의 시위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폭력시위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에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최근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한 언론포럼에 참석해 평화시위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國民편익 위한 搜査權 調整 시급

—— 李 寬 熙 (경찰대 교수 · 前 한국헌법학회장)

경찰수사권 독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상징으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치주의의 초석이다. 따라서 경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는 법치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찰기능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찰기능의 대본인 수사권의 독자성 확립임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9월 검찰과 경찰의 실무대표들로 '검·경 수사권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12월까지 9차례 회의를 가졌고, 그 후 2005년 1월 학계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 논의해 오다가 역시 핵심 쟁점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2005년 4월 공청회까지 여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까지 발족해서 드디어 12월 5일 경찰수사권 독립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상당한 기대를 하였는데 검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 후 다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조정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내실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여기에서 우선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안된 집권여당의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백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권독립이야 말로 우리의 법치주의를 한 차원 높힐 수 있는 근본책으로서 제17대 국회 개혁성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도 열린우리당의 홍 미영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인기 의원의 훌륭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 전 경기도 포천 경우회원들이 법사위원장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보여 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앞으로 1년 반이나 남았으니 공약실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일반국민이나 언론에서는 아직도 경찰수사권독립을 기관이기주의적으로 보고 '밥그릇' 싸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 의식 속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면서 동시에 검찰에 송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보장이 확실해 진다. 첫째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빨리 알게 된다.

현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느라 오랜 시간 애매한 상태로 지연되는데 바로 법적 불안정 상태의 장기화가 국민불편이고 인권침해인 것이다. 둘째는 경찰수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번 더 검찰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수사행정체제를 갖추게 되면 경찰은 보다 책임있게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은 일이 반감되면서 보다 중요한 사건과 기소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검·경 모두에 효율적인 「윈-윈 전략」인 것이다.

여기에서 경찰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려면 독립적 수사주체(형소법 제195조 개정)가 되어야 하고 검찰의 지휘배제(제196조 개정)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지휘 대신에 송치 후 사후통제로서 충분하다. 더구나 인권에 중요한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다만 법개정 후 경찰은 책임있는 수사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혹시나 경찰수준이 나아지면 가능하다는 논의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형소법이 경찰의 수준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 된다.

덧붙여 경찰수사가 '민생범죄'라는 개념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세계 어느나라도 그러한 구분을 하는 경우는 없고, 경합범의 경우 등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권한다툼 등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일본식으로 수사권을 개방하면 자연히 대형 정치·경제 사범 등 중요범죄(3%)는 검찰이 하게 되고, 그 밖에 일반 범죄(97%)는 경찰이 맡게 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찰상임위원에 李奎植 前 해양경찰청장

新任 경찰 상임위원에 이규식 前 해양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이 상임위원은 경찰 간부후보 20기로 경찰에 입문하여 인사·수사·기획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가운데, 지난 98년 경찰청 기획관리관 재직시에는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전국의 파출소를 통·폐합 시범운영하는 등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 시절에는 중국·일본·러시아 등 북서태평양 연안국가간의 오염방제, 수색구조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상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우회 기획조정위원장을 맡아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경우회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의 개혁 및 발전 방안 등 시책개발에 힘써 왔었다.

이 상임위원은 오는 2009년 7월 30일까지 3년간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약 력

▲1944년생 ▲동아대 법대 ▲서울중부서장 ▲경찰청 인사과장 ▲경찰청 기획관리관 ▲부산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해양경찰청장

搜查權 調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 근대적인 二重搜查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검 · 경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와 여 · 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 · 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0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 · 警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정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 · 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 · 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 · 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밥그릇 다툼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大韓民國在鄕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